

[(주)케이아이엔엑스 이용약관 개정대비표]

- CDN 서비스 이용약관

현재 약관	개정 약관
<p>제 1장 총칙</p> <p>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각종 CDN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p> <p>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CDN 서비스 : 회사가 복수의 IDC(Internet Data Center)에 분산하여 설치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의 서비스 대상 콘텐츠를 최종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③ 고객 : 회사 CDN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CDN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④ 요금납부책임자 :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p>	<p>제 1장 총칙</p> <p>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삭제) CDN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이용규정 또는 세부 이용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p> <p>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회사가 복수의 IDC(Internet Data Center)에 분산하여 설치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의 서비스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를 최종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 ③ 고객 : 회사 CDN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④ 요금납부책임자 :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등 모든 채무</p>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부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 5조 (계약의 성립)

회사 CDN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회사 CDN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6조 (이용신청)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8조 (승낙의 유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7.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8.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를 1차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 5조 (계약의 성립)

회사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삭제)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6조 (이용신청)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8조 (승낙의 유보 및 철회)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추가)등록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 (신설)8. 이용신청고객이 회사에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 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 9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고객의 지위 승계)

①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설)③ 회사는 이용계약이 성립된 후에라도 본 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경우 이용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설)④ 회사가 이용승낙을 유보, 철회한 경우 이를 이용신청고객이 기재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연락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였거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통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이용신청고객은 문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 9조 (계약내용의 변경)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회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 간에 서면통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신설)단, 고객과 회사간에 이용계약 만료 및 해지관련 별도의 서면통보 조건을 합의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지위 승계)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후 이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12조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략)
- ②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의 이용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경우
- 5. 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관계 법령 및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1개월 이내에 그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의견진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제 13조 (의견 진술)

- 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이용고객의

지위승계를 승인하지 않고 그 뜻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신설)③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리를 본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등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략)
- ②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2.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이용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경우
- 5. 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관계 법령 및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삭제) 그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의견진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설)6.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0조 고객의 의무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 ⑤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제 13조 (의견 진술)

- 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net)에 [게시함으로써](#) 회사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위약금)

① [1. CDN 서비스 해지 월 이전 최근 3개월간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한 요금 평균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이용 대금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의 원인이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의해 해지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요금계산방법)

① [과금 주기는 월을 단위로 하며, 사용한 후에 요금을 지불하는 후불제로 합니다. 단, 1개월 이하 기간 동안의 이벤트형 서비스가 2 개월에 걸쳐 이용되는 경우, 서비스 종료 익월 말에 통합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net)에 [게시하면](#) 회사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위약금)

① [1. 약정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 50/100\)](#)

[단, 이용고객과 회사간 체결한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위약금 조건을 별도 표기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잔여 개월 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으로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약정기간 내에](#)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이용 대금

[\(신설\)3. 회사로부터 각종 장비를 임대하는 이용고객의 경우, 또는 이용고객에게 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재제공하는 서비스\(전용회선, 전용상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약정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15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이 원칙이나, 이용고객과 회사간 협의하여 후납, 분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월 사용액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계산하며,](#)

②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일 사용액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며, 서비스 개시 시간이 1일의 가운데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2. 월 사용액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요금을 계산하며, 서비스 개시일, 변경일, 해지일이 해당월의 가운데인 경우에는 요금을 해당월의 유효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개시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고,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16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회사는 이용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서발행일'까지 청구서가 도달되도록 고객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대금결제일'(휴일의 경우는 익일)까지 요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납입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기간 분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또는 이용제한 기간 등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요금납부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 기관이거나 회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이나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요금의 납부 의무)

고객은 회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2주 내에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해당월의 가운데인 경우에는 요금을 해당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설)③ 서비스 개설 시의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요금 청구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④ 계약의 약정기간은 서비스 개통 후 실제 과금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제 16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회사는 이용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고객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 월말(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과 회사간 청구, 납부조건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삭제)

② 요금납부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 기관이거나 회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이나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요금의 납부 의무 및 예치금, 선납금)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부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18조 (납부 불이행)

② 25조(서비스 일시 이용 중단) 및 27조(서비스 이용 정지) 조건에 따라 회사가 직권으로 납입 불이행에 따른 서비스 일시 이용 중단 및 서비스 이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제2항과 같이 납입 불이행으로 인해 직권으로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의 데이터 소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조 (이의신청)

① 납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④ 이의 신청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서 요금 등이 이미 납부된 때에는 회사는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설)② 회사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 또는 회사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고객에게 요금납부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 및 선납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설)③ 예치금 및 선납금은 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단, 회사는 예치금 및 선납금을 이용요금 등과 상계할 수 있으며 만약 상계처리 후 잔액이 없을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18조 (납부 불이행)

②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제2항과 같이 납부 불이행으로 인해 직권으로 서비스가 정지 또는 해지된 경우의 고객 데이터 소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조 (이의신청)

①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④ 회사가 이의 신청 내용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요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요금의 반환)

-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액과 상계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 5장 서비스 이용 및 중단 시 대책

제23조 (서비스 개시일)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시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서비스 개시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새로운 개시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24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0조 (요금의 반환)

-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과 상계합니다.
- ②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 5장 서비스 이용 및 중단 시 대책

제23조 (서비스 개통)

(신설) ① 회사는 회사 CDN관련 시스템에 고객의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고 동작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용신청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지 않음을 알리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정상 동작을 상호 확인한 때에 개통이 완료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이용신청고객이 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24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5조 (서비스 일시이용중단)

① 고객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합니다.

1. '서비스 유보' 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일 것
2. 2개월 이상의 요금 체납이 없을 것
3. 중단 기간은 1년 동안 총 90일을 넘지 않을 것
4.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②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일시 이용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중단 개시일의 2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③ 서비스 일시 이용중단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에게 아래 조건에 의거 해당 기간 동안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1. CDN 서비스: 네트워크 트래픽 이용 요금은 청구하지 않고 스토리지 이용 요금의 50%를 청구합니다.

제 26조 (서비스 이용의 휴지)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

② 제 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별도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5조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① 서비스 이용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유보의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1. (삭제)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일 것
2. 2개월 이상의 요금 체납이 없을 것
3. 중지 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4. 1년간 1회만 신청 가능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중지한 고객에게 해당 중지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스토리지 이용료의 50%만 청구하고, 네트워크 이용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중지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삭제)

제 26조 (서비스 제공의 휴지)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제공을 휴지할

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27조(서비스 이용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생략)

제 28 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① 제7장 이용제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의 장애가 발생 시 회사는 서비스 중단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을 대비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고객 소유의 서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고객이 직접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네트워크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제11장 손해배상 규정에 따릅니다.

제 6장 의무와 책임

제29조 (회사의 의무)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의 적법 절차의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27조(서비스 이용 정지) (7장 이용제한과 중복되어 삭제) *이하 조항번호 수정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생략)

제 27 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① 제7장 이용제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에게 장애가 발생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을 대비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고객 소유의 서버 및 통신장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고객이 직접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삭제)

제 6장 의무와 책임

제28조 (회사의 의무)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의 적법 절차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1. 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 점검일 오전 05시~07시 사이에 정기적 운영 점검을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30조 (고객의 의무)

⑤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고객은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콘텐츠를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1.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교사, 방조하는 내용
2.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그 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

⑦ 고객의 콘텐츠가 제삼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의해 생기는 모든 소송 및 민사·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있습니다.

⑧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고객센터, 통계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본 계약의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제공한 각종 문서, 그 외 비밀 유지를 요하는 정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⑨ 고객은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서버, 네트워크, IP Address, 도메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설비의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④ 1. 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삭제) 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신설) ⑧ 회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 추가서비스(DNS 등)는 고객의 편익과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무료 제공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장애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여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제29조 (고객의 의무)

⑤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 보완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고객은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콘텐츠를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
2.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그 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

⑦ 고객의 콘텐츠관련 제삼자의 저작권을 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있습니다.

⑧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고객센터 및 통계관련 정보, 각종 소프트웨어, 본 계약의 체결 관련하여 제공한 각종 문서, 그 외 비밀 유지를 요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삼자에게 공개하거나 전달,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⑨ 고객은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서버 및 통신장비, 네트워크, IP 주소, 도메인, 데

⑩ 고객은 본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명백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31조 (이용의 제한)

-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한 재판매이용계약(생략)
-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17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본 약관의 스팸 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이타베이스 등의 설비 및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⑩ 고객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명백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30조 (이용의 제한)

-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삭제) 재판매이용계약 (생략)
-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삭제)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삭제)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불법 스팸 메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8. (삭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 관련 목적에 활용하려는 경우
 -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회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회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32조 (이용제한 절차)

④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 IDC에서 백본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전원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회사 임의로 OFF 시키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치를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 8장 손해배상

제34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CDN 서비스 장애 기준: 회사의 DNS/GLB 장애, ISP/IDC의 네트워크 및 전원 장애로 인해 CDN 전체 서비스가 단절되는 것

③ CDN 서비스 손해배상 기준

- 1. 99.0% 이상 ~ 99.9% 미만 : 월 이용료의 10%
- 2. 95.0% 이상 ~ 99.0% 미만 : 월 이용료의 25%
- 3. 95.0% 미만 : 월 이용료의 50%

④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31조 (이용제한 절차)

④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 IDC에서 백본망 연결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삭제)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치를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 8장 손해배상

제3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회사가 제공하는 CDN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③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장애라 함은 회사의 DNS · GLB 장애, 타통신사업자 또는 IDC의 네트워크 및 전원 장애로 인해 고객이 이용하는 CDN 전체 서비스가 단절되는 것으로 합니다.

④ 회사의 CDN 서비스 손해배상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기간 적용) 월평균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비율을 정합니다.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37조 (지적 재산권)

① 고객은 서비스 대상 콘텐츠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가진다.

제 38조 (면책)

8. 고객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했던 주관적인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계 자료 등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9. 회사의 의무는 고객에 한정하는 것이며, 제삼자로부터 어떠한 배상 요구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9조(불가항력)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국제분쟁, 그 외 회사와 고객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쌍방 모두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

1. 서비스 월 가용률 99.0% 이상 ~ 99.9% 미만 : 월 이용료의 10%
2. 서비스 월 가용률 95.0% 이상 ~ 99.0% 미만 : 월 이용료의 25%
3. 서비스 월 가용률 95.0% 미만 : 월 이용료의 50%

④ (삭제)

(신설) ⑤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영업손실 또는 중복적으로 계산된 영업손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실은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36조 (지적 재산권)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고객의 적법한 콘텐츠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가집니다.

제 37조 (면책)

(삭제)

제 38조(불가항력)

고객과 회사간에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국제분쟁, 그 외 회사와 고객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 없는 경우, 쌍방 모두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